

고당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

공고 제2021- 76호에 의거 시행하는 고당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물건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의 종류, 구조, 수량 등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사업개요 | 사업의 위치 |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|
| | 사업의 명칭 | 고당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|
| | 사업의 규모 | 사업면적 : 84.1ha |
| | 사업시행자의 명칭 | 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장 보상사무실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 지역개발부 |
| 2. 보상대상물건 | 토지 조서 : 별첨(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함) | |
| 3. 보상계획 열람 | 1. 열람장소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개발부 2.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: 2021. 07. 15. ~ 2021. 07. 29. | |
| 4.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및 절차 | | |
| 구분 | 일자 (변경 가능, 추후 통지) | 주요 내용 |
| 감정평가 | 2021.09. | 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희망여부,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, 의견 등을 기재하여 보상 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. |
| 보상액 산정 및 통보 | 2021.09. | 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 산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|
|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| 2021.10. | 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(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 |
| 보상비지급 청구 및 지급방법 | - | 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종료합니다. |

1.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 혹은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3. 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토지관련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합니다.

2021. 07. 15.

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

